

KERI Brief

최근 ESG 해외소송과 기업 리스크 관리에 대한 시사점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tklee@keri.org)

세 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ESG 관련 규제는 엄격한 '법인격독립'을 넘어서는 조치이며 ESG 관련하여서는 기존 회사법의 관점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해외 자회사가 초래한 환경피해에 대해 모회사가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며 또한 모자 회사 관계를 넘어 공급망 차원 또는 상품을 중개한 기업에 까지 책임을 묻는 소송이 제기되고 있으며 법원도 이를 허용하고 있다. 'Okpabi v Royal Dutch Shell'의 경우 2021년 2월 영국 대법원은 고등 법원(The High Court)과 항소 법원(Court of Appeal)을 결정을 뒤엎고 영국 모회사에 대한 해외로부터의 소송이 가능하다는 소송 관할권(jurisdiction)을 인정하였다. 또한 'Begum v Maran Ltd.' 소송의 경우는 모자 관계상의 책임확대 소송을 넘어 중개기업에 대한 책임의 '예외적 확대(unusual extension)'라고 평가를 받는 경우이다. 영국 법원의 판결을 볼 때 모회사가 자회사 또는 협력업체의 의사결정에 얼마나 관여 가능하느냐에 따라 회사의 책임 여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EU 기업 공급망 실사 지침과 유럽 주요국의 공급망 실사 규제 등은 회사로 하여금 자회사와 협력업체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이 규

제에 충실할수록 피해 발생 시 소송의 적법성은 더욱 커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다. 그룹 내에서 공급망 차원으로 ESG 관련 리스크가 확대됨에 따라 기업집단의 전사적 리스크 관리(Enterprise Risk Management)의 개념을 확대하여 범(汎)기업 협력적 리스크 관리(Pan-Enterprise Cooperative Risk Management)의 개념으로 확대가 필요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분관계가 없는 기업집단 밖의 협력업체에까지 어떻게 통일된 리스크 관리 기준을 강제할 수 있는냐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래 여부를 지렛대로 ESG 리스크 관리 기준을 협력업체에 강제하거나 패널티를 줄 경우 하도급법(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및 공정거래법(거래상 지위 남용) 등의 위반 가능성도 존재한다. 현재는 협력기업과의 서약 시 패널티 조항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ESG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글로벌 규제의 강도가 강화되면서 협력기업에 대한 리스크 관리의 수준도 높아질 수 있고 이것이 경영간섭을 둘러싼 분쟁을 야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규제당국은 ESG 리스크 관리와 경영간섭 간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불확실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

1. 논의의 배경

- 기업 경영에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 근로자, 협력사,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기업평가에 고려하는 추세가 확산
- 특히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는 제도변화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
 - ESG 의무공시, ESG 투자확대 등을 요구하는 국가도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가치 산정에 있어 ESG 요소를 고려하는 투자자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
- 특히 중국견제의 한 방법으로 ESG 적용을 공급망 차원으로 확대하는 규제가 유럽에 도입됨에 따라 ESG에 대한 책임성은 개별회사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
 - EU집행위원회는 2022년 2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이하 EU 기업 공급망 실사 지침)을 마련하였고 당해 12월 이사회 합의안을 발표하였고 이를 2023년 5월 유럽의회에서 최종안 표결 예정
- 많은 국가의 회사법 체계는 개별 기업의 법인격독립을 전제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한 기업의 법률적 통제권 밖에 있는 다른 기업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 기존 회사법의 입장
- 하지만 ESG 관련 규제는 엄격한 '법인격독립'을 넘어서는 조치이며 자회사 등이 초래한 손해에 대해 모회사도 책임을 묻는 소송이 진행되는 등 ESG 관

련하여서는 기존 회사법의 관점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즉 기업집단에서 지배회사는 자회사의 ESG 관련 경영을 감독해야 할 의무가 생길뿐 아니라 더 나아가 협력회사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임
- 실제로 해외 자회사가 초래한 환경피해에 대해 모회사가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임
 - 영국 대법원(2021)은 'Okpabi and others vs Royal Dutch Shell Plc and another' 소송에서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고 원고(피해주민)가 주장하는 '모회사의 책임분담'이 이유 있다고 보고 해외에서 일어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영국 법원에서 소송이 가능(영국 법원에서의 jurisdiction을 인정)하다고 판결
 - 또한 모자 회사 관계를 넘어 공급망 차원 또는 상품을 증개한 기업에까지 책임을 묻는 소송(Begum v Maran Ltd.)이 제기되고 있으며 법원도 이를 허용
- 따라서 본 보고서를 통해 최근 ESG 관련 해외소송 사례를 파악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리스크 관리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II. ESG 관련 해외규제 동향

1. ESG 관련 국제기구의 연성규범

- ▣ ESG 관련 국제적 규제는 연성규범(soft law)에서 출발하여 이제는 경성규범(hard law)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
- ▣ ESG 관련 대표적 국제 연성규범은 'UN 인권경영' 과 'OECD 책임경영'이라 할 수 있음
- ▣ 지난 2011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 Human Rights)'(이하 UNGP)을 만장일치로 채택 하면서 기업의 인권경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 하였음
- UNGP는 '국가의 보호, 기업의 인권존중, 국가의 구 제'라는 세 개의 큰 축을 중심으로 이행원칙을 제시 하였음
- 국가의 보호의무: 국가는 기업과 같은 제3자로부터 개인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
 - 국가는 기업관련 법률이 인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법을 제정해야 하며 엄정하게 집행해야 함
-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기업은 국제적으로 승인된 인권원칙에 따라 인권을 존중해야 함
 - 기업활동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업은 정책과 절차를 만들고 이의 실행 을 위한 실사(due diligence)를 수행하여야 함
- 국가의 구제: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는 사법 적, 행정적, 입법적, 또는 그 밖의 수단을 통해서 피

해자가 효과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 구제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절차의 운영이 정당해 야 하며, 피해자가 접근 가능하고 처리과정과 결과가 예측가능하며, 피해자들이 공정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2021년에는 UNGP 10주년을 맞아 UN은 8개의 인 권과제 로드맵을 제시(UNGPs 10+, A Roadmap For The Next Decade Of Business And Human Rights)

- 8개 과제: ①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침반 역할 ② 인권정책의 조화로운 적용을 통한 효과성 제고 ③ 인권존중에 대한 기업 책임성 강화 ④ 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책 마련 ⑤ 인권존중을 위한 이해 관계자의 폭넓은 참여 ⑥ 금융부문의 ESG 모델링 확보와 UNGP를 활용한 사회와의 연계 ⑦ 목표-성 과 검토 프로세스 구축 ⑧ 지역단위 및 국가단위의 협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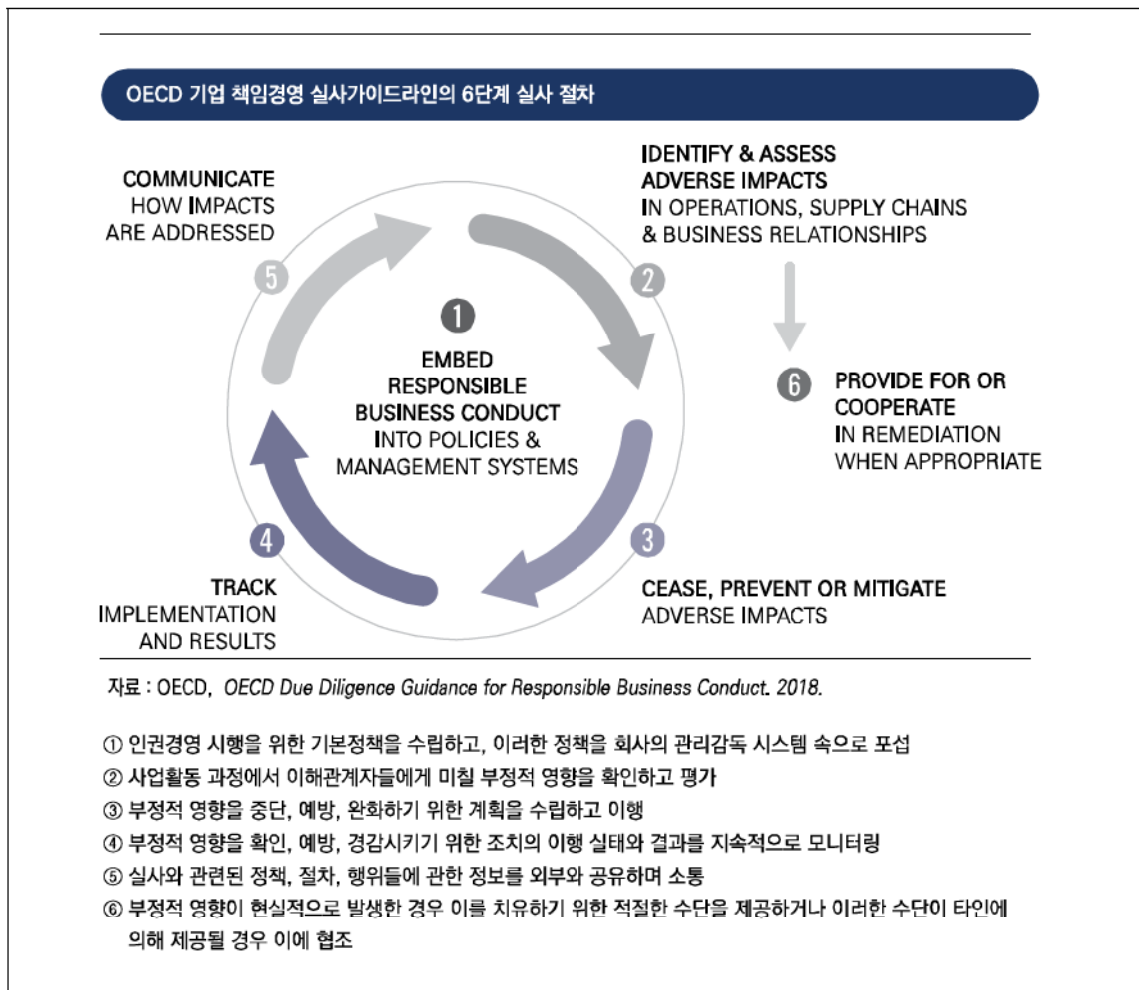
▣ 한편 OECD는 2018년 기업 책임경영을 위한 실사 지침(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을 발표

- 이 실사 지침은 OECD의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기업책임경영과 관련되어 다 국적기업이 준수해야 할 비구속적인 권고사항 (non-binding recommendations)을 담고 있음
- OECD 실사 지침 절차(due diligence process)는 기 업실사는 기업의 특수상황이나 환경에 맞추어 이 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다음과 같은 6가 지 실사 절차를 제시

- (1) 기업의 정책 및 관리시스템에 인권경영에 대한 기업책임경영을 내재화(embed)함 (2) 기업책임경영 문제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실제적으로 혹은 잠재적으로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파악함 (3) 그러한 부정적 영향을 중지, 예방, 완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implementation) 함 (4) 기업실사의 이행

결과를 추적함 (5) 부정적 영향들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등의 정보를 외부와 공유하며 소통함 (6)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 경우 이를 치유하기 위해 필요한 구제조치 제공함

<그림 1> OECD 실사 지침 및 지원 절차



자료: 신석훈(2023) 재인용

2. ESG 관련 규제의 경성화

▣ 2022년 12월 합의된 EU 기업 공급망 실사 지침은 EU의회 승인·발효 이후 각 회원국이 2년 이내 자국 법률로 제정하여 적용

- EU집행위가 제출한 초안에 대해 EU이사회와 EU의회가 각자의 최종 입장을 정한 후, 3개 기관이 협의를 거쳐 최종 법안이 확정될 예정임('23년 하반기)
- 2022년 2월: EU 집행위(EU Commission), 공급망 실사 지침안(Proposal for 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발표
- 2022년 12월: EU 이사회(EU Council), 지침안에 대한 일반 합의(General Approach) 채택

- '23. 5월경에 본회의 의결을 통해 EU의회의 최종 입장이 확정될 예정
- 그 이후, 3개 기관이 협의과정을 거쳐 2023년 하반기 안으로 최종(안)이 확정 및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고는 있으나 정확한 일정이 공개되지는 않음
- 적용대상 기업에게 자사 사업장 및 공급망 전체에서 환경훼손 및 인권침해 관련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고 개선 및 공개할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벌금, 민사상 책임 부여
-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 절차를 내규에 명시, 실제 이행 내용을 공시해야 함

〈표 1〉 EU 기업 공급망 실사 지침(안)

| 국가 | 내용 |
|--------|--|
| 시행시기 | 대기업은 지침 발효 2년 후, 고위험산업 중견기업은 지침 발효 4년 후부터 적용 |
| 기업의 의무 | 공급망 내 인권 및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있거나,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실사 수행 및 정보 공개 의무를 적용대상 기업에 부여함 - 기업정책에 공급망 실사 의무 반영 - 인권 및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 파악 및 평가 의무 - 실질적·잠재적 영향의 예방·제거·최소화 의무 - 피해 구제절차 마련 및 유지 의무 - 기업 실사정책 및 조치 효과 모니터링 의무 - 실사의무 이행 내용 공개 의무 - 위반 시 벌금 부과, 민사상 책임 부여 |
| 적용대상 | <EU 역내 기업> 그룹1: 직원 수 평균 500인 이상, 직전 회계연도 전 세계 매출 1.5억 유로 이상 그룹2: 250인 이상, 직전 회계연도 전 세계 매출 4천만 유로 이상이며, 그 중 2천만 유로 이상이 고영향 섹터인 경우 * 고영향 섹터(High-impact Sector): 섬유 및 가죽 생산, 유통; 옷, 신발; 농업, 임업, 어업, 음식품업 생산, 유통;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 원자재 생산, 유통; 철강 생산, 유통 <EU 역외 기업> 그룹1: EU 내 매출 1.5억 유로 이상 그룹2: EU 내 매출 4천만 유로 이상이고 1.5억 유로 미만이며, 그 중 2천만 유로 이상이 고영향 섹터인 경우 * 직원 수 기준은 없음 |

자료: 저자 재구성

◻ EU 기업 공급망 실사 지침에 대한 국내 기업의 준비 및 대응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특히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

◦ 대한상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절반에 가까운 기업들이 아직 준비를 못하고 있는 상황¹⁾

◦ 특히 고영향 섹터(환경과 인권문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업종)의 수출 중소기업일수록 이 규제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

◻ 프랑스는 2017년 3월 유럽 주요국 중 가장 먼저 기업실사 의무법인인 '모기업과 위탁기업의 경계 의무에 관한 법'(Duty of Vigilance of Parent and Ordering Companies)을 발효

◦ 인권 전반에 대한 기업실사의 수립 및 이행에 대한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였으며, 연례보고 미이행 및 미이행으로 인한 침해 발생 시 과징금을 부과

- 적용 대상: ① 프랑스 내에 본사를 두고 자사 및 직·간접 자회사를 포함한 임직원 수가 5,000명 이상인 기업 ② 본사 위치와 관계없이 직간접 자회사 및 자사 서비스업 임직원 수가 1만 명 이상인 기업

◻ 독일은 공급망 실사의무법(Act on Corporate Due Diligence Obligations in Supply Chains)을 2021년 7월 통과시켜 2023년 1월부터 발효되었음

◦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 독일 기업의 인권 존중과 기업의 환경적·사회적 책임을 법적 제재를 통하여 부과

- 적용 대상: 독일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둔 기업, 독일에 지사를 둔 외국계 기업 등으로 최소 3,000명의 직원을 둔 기업이 대상이며 2024년부터 점차 대상이 확대되어 최소 1,000명의 직원을 둔 기업까지 포함될 예정

◦ 실사의무의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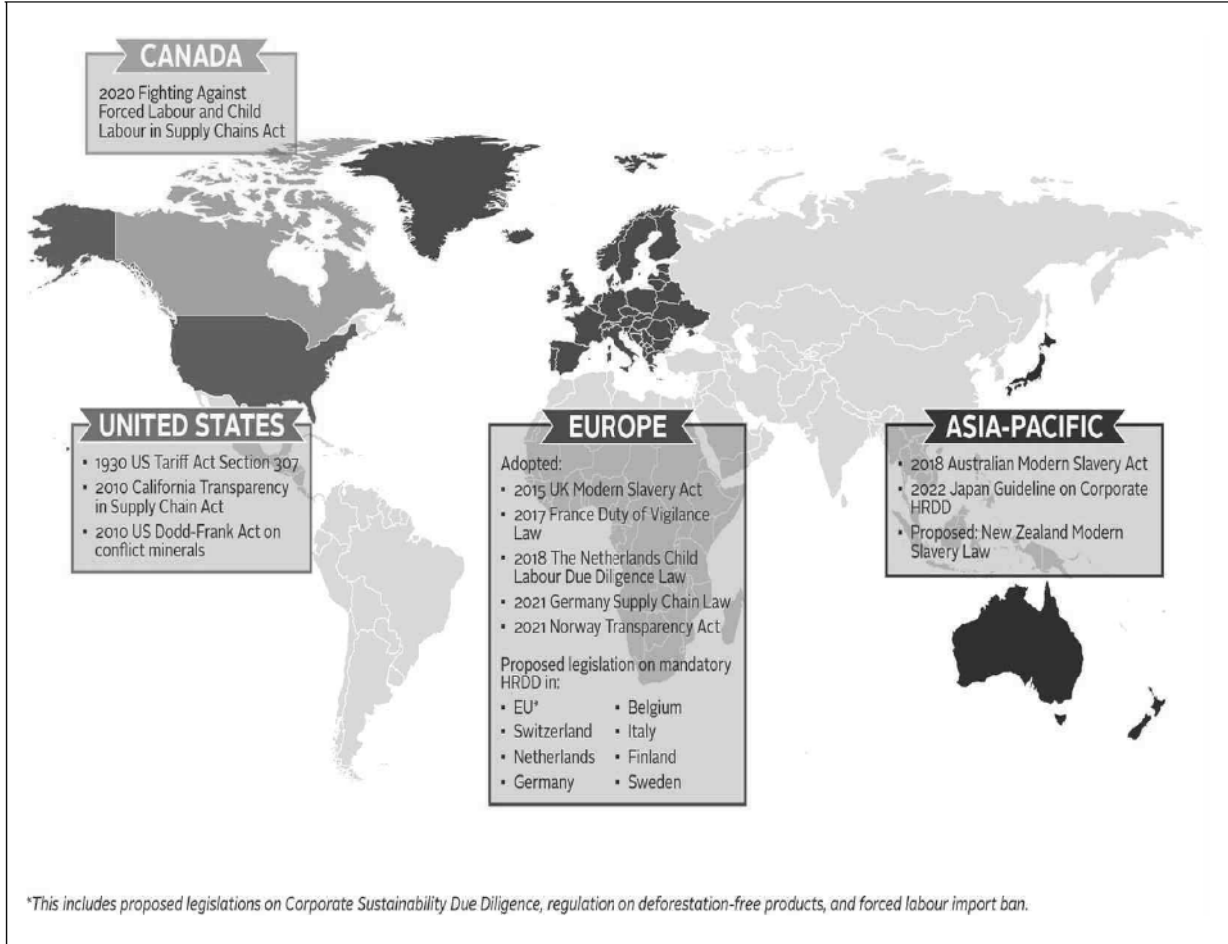
- 근로자의 인권 존중 및 사회적 리스크 관리 체계 및 기구 설치 의무화
- 예방 및 회복 조치와 피해사례 민원 절차를 의무화
-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안으로 공급망 실사 관련 연례보고서 작성 및 공개
- 기업 자체의 사업활동, 계약 파트너가 기타 공급업체와 같은 1,2차 협력업체 등 기업의 공급망에서 인권 침해 요소나 문제가 발견될 시 해결한 후 정부에 보고 의무화

◻ 그 외 2019년 네덜란드 Child Labour Due Diligence Act, 2021년 노르웨이 Transparency Act, 2020년 캐나다 Fighting Against Forced Labour and Child Labour in Supply Chains Act 등이 제정되었음

- 현재 벨기에, 핀란드, 스위스 등에서도 기업의 공급망 실사 의무 관련 국내법 제정을 논의하고 있음

1) 「2023년 ESG 주요 현안과 정책과제」, 조사결과에 따르면 원청기업 48.2%, 협력기업 47%가 공급망 실사에 대한 대응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

〈그림 2〉 세계 주요 지역 공급망 실사법 입법 현황



자료: UN PRI(2022), Managing Human Rights Risks: What Data do Investors Need?

III. ESG 관련 해외소송의 변화 - 기업의 책임의 확대

1. 확대된 모회사의 책임

□ 최근 ESG 소송이 과거와 구분되는 중요한 트렌드 중의 하나는 소송대상 - 피고 - 의 변화임

○ ESG 관련 규제가 유럽을 중심으로 먼저 제도화됨에 따라 ESG 소송도 유럽에서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제도변화에 따라 소송 대상(피고)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ESG 관련 분쟁의 당사자(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소송을 넘어 책임소재의 최종 종착지로 간주되는 회사로까지 소송이 확대되는 추세

□ 특히 해외 자회사의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모회사에게도 그 책임을 묻는 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며 법원도 소송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판단(관할권 인정)하고 있음

○ 대부분 국가의 회사법은 개별 회사의 독립 법인격을 중심으로 법리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모자 관계의 회사라도 개별 회사의 독립적 책임을 중시

□ 대표적인 예로 'Okpabi v Royal Dutch Shell'의 경위를 들 수 있는데 2021년 2월 영국 대법원은 고등법원(The High Court)과 항소 법원(Court of Appeal)을 결정을 뒤엎고 영국 모회사에 대한 해외로부터의 소송이 가능하다는 소송 관할권(jurisdiction)을 인정

○ 영국 Royal Dutch Shell(RDS)의 나이지리아 자회사 Shell Petroleum Development Company of Nigeria

Ltd (SPDC)에 의해 환경피해를 입었다는 나이지리아 주민들(원고)이 영국 모회사에게도 '주의의무'(duty of care) 소홀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

○ 영국 고등 법원과 항소 법원은 '모자 회사 간 동일한 정책을 공유(group-wide policies)하는 것 자체가 모회사에게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제한의 원리(limiting principle)를 들어 원고의 영국 모회사에 대한 영국 법원에서의 소송을 기각하였음

- 즉 하위 법원은 회사법 상 독립 법인격을 바탕으로 해외 자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모회사의 자동적인 책임(liability)을 인정하지 않았음

○ 하지만 영국 대법원은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의무가 있고 실제로 자회사의 경영에 관여할 수 있으므로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함

□ 영국 대법원의 'Okpabi v Royal Dutch Shell'에 대한 판단은 이전의 유사한 소송인 'Vedanta Resources Plc v Lungowe'판결(2019년 4월)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음

○ 영국 광산회사 Vedanta의 잠비아 자회사 KCM이 독성물질을 방류한 혐의로 잠비아 주민들은 KCM와 함께 모회사 Vedanta에 대해서도 주의의무 태만으로 소송을 제기

○ Vedanta社は KCM이 자회사이지만 잠비아에서 설립된 독립법인격임을 근거로 모회사는 자회사의 행위에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

2) Whether a duty of care is owed "depends on the extent to which, and the way in which, the parent availed itself of the opportunity to take over, intervene in, control, supervise or advise the management of the relevant operations (including land use) of the subsidiary"

○ 하지만 대법원은 주의의무의 여부는 '모회사가 자회사의 운영에 개입, 통제, 감독 또는 조언할 수 있는 기회를 어느 정도, 어떤 방식으로 활용했는지에 달려 있다'²⁾ 며 모자 관계는 이러한 기회가 모회사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함

- 보다 구체적으로 Vedanta社は 그룹 차원(group-wide)의 안전 및 환경정책을 공표하고 이러한 정책이 자회사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자회사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감시와 지배권을 행사해왔고, 결함이 있는 자문을 자회사에 제공하였고 실제로 자회사가 이러한 자문에 바탕을 둔 정책을 실행했다는 점을 들어 모회사에게 주의의무가 있음을 판시하였음

○ Vedanta 판결의 논리가 그대로 'Okpabi v Royal Dutch Shell'판결에 적용되었으며 향후 유사한 소송에서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것으로 보임

2. 공급망 차원으로 확대된 피해보상 소송

▣ 모자 관계상의 책임확대 소송을 넘어 이제는 공급망 차원으로 기업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제기되고 있으며 법원도 이를 허용

▣ 예를 들어 'Begum v Maran Ltd.'소송은 선박 중개 기업에 대한 책임의 '예외적 확대(unusual extension)'라고 평가를 받는 경우임

○ 페유조선 해체를 중개한 중개기업에까지도 주의의무 소홀도 소송이 제기되었고 법원도 이 소송을 인정한 사례

○ 영국의 Maran社は 선박 중개기업으로서 선박 소유주 Centaurus Special Maritime Enterprise (CSME)와 선박처리업자 Hsejar Maritime Inc.(Hsejar) 간

의 선박매매를 중개하였고 Hsejar는 이 선박을 방글라데시의 선박해체장에 다시 매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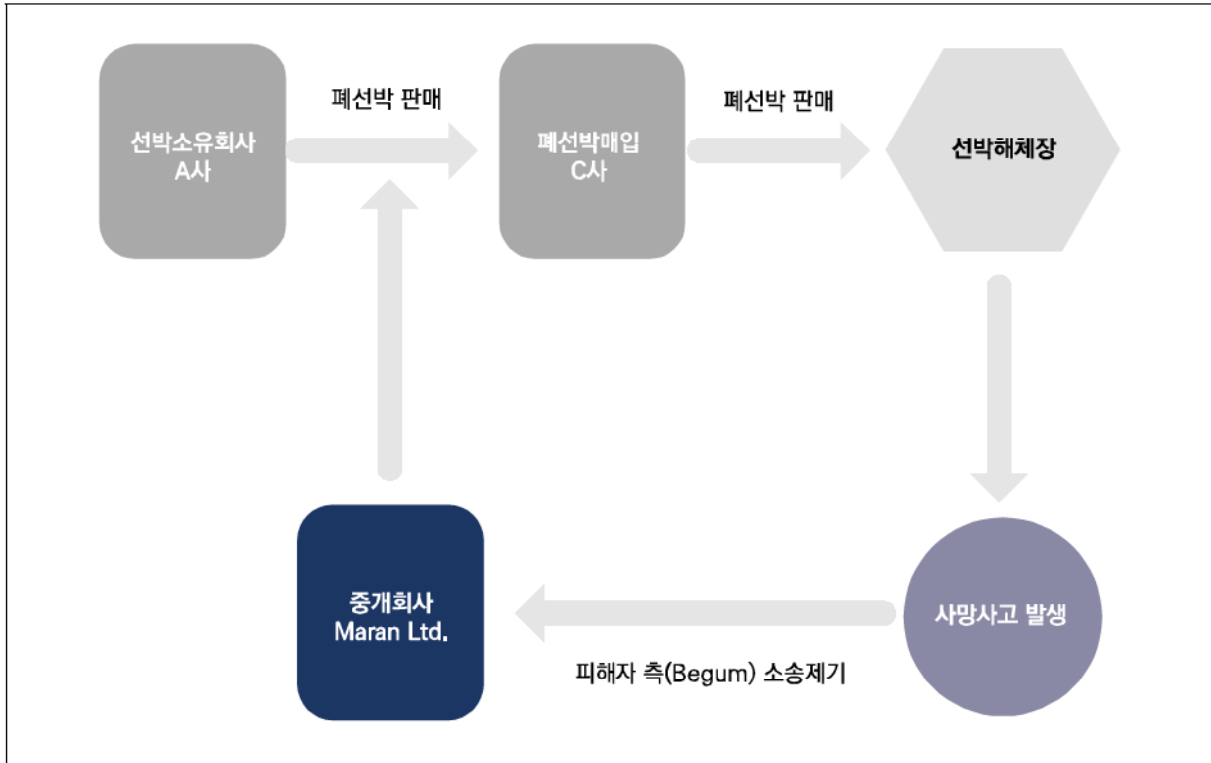
○ 방글라데시 선박해체장(Chittagong 소재)에서 이 선박해체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한 인부가 사망하였고 사망자 가족은 주의의무 소홀로 중개기업 Maran社를 영국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

- CSME와 Hsejar는 Hsejar가 선박해체장에 매각 시 안전과 환경보호가 확보되는 곳에만 매각한다는 MoA(Memorandum of Agreement)를 맺었으나 Maran社は 이 협약의 당사자도 아님

○ Maran社は 영국 항소법원에 이 소송은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아 소송 자체가 각하(dismiss)되어야 한다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법원은 이 소를 거부(refuse to dismiss)

- 항소법원은 최근 주의의무 법리의 확대 경향을 고려할 때 중개업자도 '위험의 생성(creation of danger)'에 관여하였는지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 소송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

〈그림 3〉 Begum v. Maran Ltd. 소송 개요



자료: 저자 작성

IV. 리스크 관리의 확대와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리스크 관리 경계의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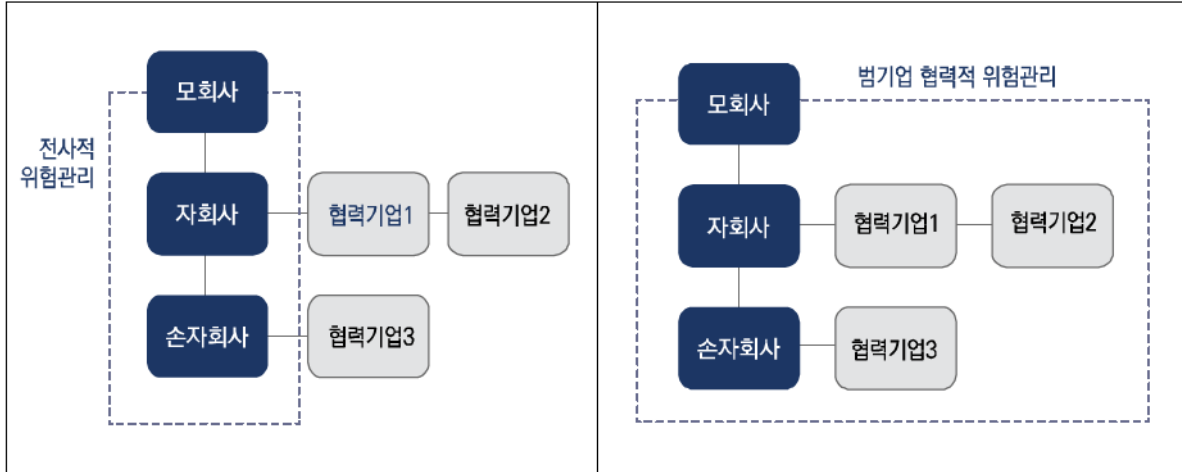
- ▣ ESG 관련 소송의 대표적 특징 중의 하나는 회사가 직접 초래하지 않은 피해에 대해 책임질 수 있다는 점이며 그 책임의 한계 또한 점차 넓어질 수 있다는 점
 - ESG 관련 소송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시작 단계이며 향후 수년 동안 상당한 법적 논쟁을 불러 올 수 있으며 책임의 한계(또는 경계(boundary)) 또한 소송을 통해 판례가 쌓이면서 정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 ▣ 영국 법원의 판결을 볼 때 모회사가 자회사 또는 협력업체의 의사결정에 얼마나 관여 가능한지에 따라 회사의 책임 여부 결정될 것으로 보임
- ▣ EU 기업 공급망 실사 지침과 유럽 주요국의 공급망 실사 규제 등은 회사로 하여금 자회사와 협력업체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이 규제에 충실할수록 피해 발생 시 소송의 적법성은 더욱 커지는 아이러니한 상황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자회사의 ESG 관련 경영 현안에 관여하지 않는 (hands-off) 방식은 더 큰 법적, 비법적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이 큼³⁾
- ▣ 따라서 세계적 규제변화의 추이는 순응하면서 회사의 ESG 관련 의무를 수행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음

- 규제불응 시 유럽시장에서 향후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큼
- ▣ 그룹 내에서 공급망 차원으로 ESG 관련 리스크가 확대됨에 따라 기업집단의 전사적 리스크 관리 (Enterprise Risk Management)⁴⁾의 개념을 확대하여 범(汎)기업 협력적 리스크 관리(Pan-Enterprise Cooperative Risk Management)의 개념으로 확대 필요
 - 법적 리스크의 경계가 이제 자회사 또는 기업집단 내의 기업을 넘어 협력업체 등으로 확대(범기업 차원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의 경계도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
 - 지분관계가 없는 협력기업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며 이는 협력기업과 원청기업과의 '협력적' 관계의 정도에 의해 결정될 것임

3) 신석훈(2022) "ESG 경영에서 실사(Due Ddiligence)의 중요성 확대 동향-EU 환경 및 인권실사 의무화법안을 중심으로"

4) 신석훈(2022) "기업집단에서 '그룹경영'의 법적 쟁점과 과제 - ESG 경영 관점에서"

〈그림 4〉 기업의 ESG 리스크 관리 개념의 확대



자료: 저자 작성

2. 공급망 리스크 관리의 한계와 극복

▣ 결국 중요한 것은 지분관계가 없는 기업집단 밖의 협력업체에까지 어떻게 통일된 리스크 관리 기준을 강제할 수 있는가

- 현재 주요 대기업은 ESG 협력사 행동규범을 제정하여 협력업체와 공급망 차원의 ESG 리스크 관리를 실천 중
- 하지만 행동규범은 본질적으로 권고사항이며 법인격이 다르고 지분관계가 없는 원청기업이 협력기업의 행동규범 준수 정도를 완벽하게 관리·감독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함

- 대부분의 경우 협력기업이 '음'이므로 규범을 준수하려고 하지만 규범준수에 따른 유무형 비용이 너무 크다고 느낄 경우 규범을 회피하려는 인센티브가 생길 수 있음

▣ 향후 거래 여부를 지렛대로 ESG 리스크 관리 기준을 협력업체에 강제하거나 패널티를 줄 경우 하도급

법(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및 공정거래법(거래상 지위 남용) 등의 위반 가능성도 존재

- 하도급법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정거래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45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2)
 - 경영간섭: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해임하는 경우에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하여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 경영간섭으로 과징금을 받은 2022년 한 사례에서는 원청기업이 '협력사 경영관리 기준'을 통해 협력업체 경영에 간섭한 결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받았는데 그 기준에는 협력사 윤리리스크 방지를 위한 기준(접대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골프회원권 등) 등이 포함되어 있었음⁵⁾

□ 따라서 협력기업과 어떻게 '협력적'으로, 하지만 실효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느냐는 것이 관건

- 즉 '협력'의 정도가 실질적 효과를 가질 수 있으면서도 현재의 경영간섭 규제에 저촉되지 않는 메커니즘을 발달시켜 나가야 함
 - 현재는 협력기업과의 서약 시 패널티 조항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ESG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하지만 글로벌 규제의 강도가 강화되면서 협력기업에 대한 리스크 관리의 수준도 높아질 수 있고 이것이 경영간섭을 둘러싼 분쟁을 야기할 수도 있음
- 따라서 규제당국은 ESG 리스크 관리와 경영간섭 간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불확실성을 줄일 필요가 있음
 - 아직 ESG 리스크 관리를 이유로 협력기업을 관리·감독한 행위에 대해 제재한 사례는 없음

5) 물론 이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위반내용은 여러 협력사 임원으로 원청기업 출신이 재직하였다는 것임(원청기업의 인사문제 해결)

V. 요약과 결론

- ESG 관련 국제적 규제는 연성규범(soft law)에서 출발하여 이제는 경성규범(hard law)로 발전하고 있으며 그 영향으로 관련 소송도 증가하는 추세
- 최근 ESG 소송이 과거와 구분되는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직접적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소송이 아닌 가해자에 대한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제삼자와 피해자 간의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 특히 ESG 관련 규제가 공급망에서의 인권과 환경 보호 등을 중시하고 있으므로 공급망의 최상단에 있는 기업에게도 피해에 대한 책임을 소구(訴求)하는 양상
- 특히 영국의 경우 해외 자회사의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모회사에게도 그 책임을 묻는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영국에서의 소송이 이유 있다고 판단(관할권 인정)하고 있음

 - 영국 대법원은 독립법인격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주의의무 책임을 질 수 있는 기준으로 그룹 차원(group-wide)의 안전 및 환경정책을 공표하고 이러한 정책이 자회사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는가, 자회사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감시와 지배권을 행사해 왔는가 등을 제시
- 게다가 기업 그룹 내의 주의의무 책임 소송을 넘어 공급망, 그리고 더 나아가 중개기업에까지도 책임의 경계가 확대되는 양상이고 영국 법원도 관련 소송을 허용
- 따라서 책임의 경계가 확대됨에 따라 기업집단의 전사적 리스크 관리(Enterprise Risk Management)의 개념을 확대하여 범(汎)기업 협력적 리스크 관리(Pan-Enterprise Cooperative Risk Management)의 개념으로 확대 필요

 - 문제는 기업 그룹 밖의 법인격이 독립된 협력업체에까지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냐는 것임
 - 현재 주요 대기업은 ESG 협력사 행동규범을 제정하여 협력업체와 공급망 차원의 ESG 리스크 관리를 실천 중
- 아이러니하게도 ESG 관련 공급망 실사 의무를 충실히 준수할수록 피해 발생 시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도 더 크게 된다는 현실
- ESG 관련 리스크 증가와 함께 협력기업에 대한 보다 강한 통제 및 패널티를 가할 경우 하도급법(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및 공정거래법(거래상 지위 남용) 등의 위반 가능성도 존재

 - 글로벌 규제의 강도가 강화되면서 협력기업에 대한 리스크 관리의 수준도 높아질 수 있고 이것이 경영간섭을 둘러싼 분쟁을 야기할 수도 있음
 - 따라서 협력기업과의 '협력'의 정도가 실질적 효과를 가질 수 있으면서도 각종 법률 상의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거래상 지위 남용 금지 등의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 관행과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임
- 한편 규제당국은 협력기업에 대한 ESG 리스크 관리와 경영간섭 간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불확실성을 줄일 필요가 있음

keri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일 2023년 8월 2일 | 발행인 김영준 |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R(타워) 46층